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 主要 法的根據

◎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수방단의 설치 운영) 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재해예방) ① 방재 책임자는 관계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방재시설의 점검·정비
5. 재해 위험시설의 점검, 정비
6. 재해 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제23조(방재교육, 훈련 및 홍보)

③ 정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의 날"을 정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방재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36조(재해응급대책) ① 방재 책임자는 관계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 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수방, 지진방재, 전화 기타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4.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
5. 긴급 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6. 급수 수단의 확보

7. 기타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3조(수방단의 조직 기준)

②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방단에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등을 둔다.

제14조(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소집)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방단을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방단원 소집 통지서를 수방단장에게 교부하고, 수방단장은 즉시 당해 단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방단원 소집 통지서를 교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상소집할 수 있다.

제25조(방제의 날 행사) ①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5월 25일을 방제의 날로 하여 재해 취약 요인 일제점검, 방제훈련 및 방재 행정 세미나등 방재 관련 행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② 중앙재해대책 본부장 및 지방재해대책 본부장은 국민의 방제의식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방제의 날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

각종 자연 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96. 3. 1 조례 제100호로 공포된 이천시 수방단운영조례를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전문개정('95. 12. 6 법률 제4993호)됨에 따라 풍수해 대책법의 제 규정을 자연재해 대책법 제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